##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도종환·김영주·박 정

김철민 • 이정문 • 안민석

기동민 · 임호선 · 김원이

이원택 · 김병기 · 이상헌

정정순 · 민홍철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 수중문화재 분 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 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출 토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없어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실질적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음.

그러나 보존유적 토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의 정착물, 기타 권리 등에 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유 재산권침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가 같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6조에 따라 매입한 보존유적 토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및 제26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법률 제 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 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문화재청 소속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발굴이 특별 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 국립박물관
- 2. 공립박물관 또는 대학박물관
- 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제26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을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를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을 "토지 등의 매입 방법과 절차 등"을 "토지 등인 매입 방법과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	발굴) ①
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발
	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	문화재청 소속의
<u>장문화재 조사기관</u> 으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이외에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조사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관</u>
	<u>.</u>
<u>&lt;신 설&gt;</u>	1. 국립박물관
<u>&lt;신 설&gt;</u>	2. 공립박물관 또는 대학박물
	<u>관</u>
<u>&lt;신 설&gt;</u>	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
	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
	관

#### ③ ~ ⑦ (생 략)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 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 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 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토지 매입의</u><u>방법과 절차 등</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
른 토지 등의 매입) ①
<u>해당 토지 등을 매</u>
<u>입할 수 있다</u>
,
② <u>토지 등의 매</u>
입의 방법과 절차 등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